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17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박성민

강승규 · 김선교 · 고동진

정희용 • 김상욱 • 김예지

이종배 · 김정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한다)의 지정
- 2.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지정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 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u>대</u>	과 해제) ① <u>다</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가 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	<u>하는 사유</u>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u> <신 설></u>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			
	복합산업지구에 한정한다)의			
	<u>지정</u>			
<u> <신 설></u>	2.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지정			
<u><신 설></u>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